

## &lt;간이투자설명서&gt;

(작성기준일 : 2018.06.03)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 15869)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 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시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I.

## 집합투자기구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ul>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현대자산운용주식회사 (☎ 02-2090-0500)		
모집[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조좌
효력발생일	2018년 06월 11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yundaiam.com">www.hyundaiam.com</a> )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홈페이지 참고		

종류 [Class]	A	C	C-e	S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펀드슈퍼마켓 온라인가입자
판매수수료	(선후)납입금액의 1%이내	-	-	(후후)3년미만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	-	-	-
보수 (연%)	판매 0.7800 운용등 0.7200 기타 0.0049 총보수·비용 1.5049	1.5000 0.7200 0.0007 2.2207	1.0000 0.7200 0.0049 1.7249	0.3500 0.7200 0.0014 1.0714

※ 주석사항	<p>(주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종류C2, C3, C4, C5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 수익증권에 한하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중 (2) 전환절차 및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주2)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I, 종류C-I+, 종류C-W, 종류AG,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2e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주3)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5)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주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주6)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p>			
--------	---	--	--	--

매입방법	-15시30분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30분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판매방법	<p>-15시30분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로 제4영업일자급 -15시30분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로 제4영업일자급</p>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yundaiam.com">www.hyundaiam.com</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 기구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추구

-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60% 이상을 투자
- 기타 투자대상인 구조적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유관기업들은 40% 이내 투자

“현대그룹플러스주식”이란 다음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단, 추후 각 계열의 변동 혹은 계열내 신규 편입되는 종목(기존 혹은 신규 종목 등)은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룹명	해당 기업명
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글로비스, HMC투자증권, 현대하이스코, BNG스틸,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산업개발그룹	현대산업개발, 현대EP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종합상사
현대해상화재그룹	현대해상화재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 현대H&S, 현대DSF, 현대홈쇼핑, 현대HCN
성우그룹	현대시멘트
한라그룹	한라건설
KCC그룹	KCC, KCC건설
기타	SK하이닉스, 한온시스템(구,한라공조), KB증권(구, 현대증권)

■ 비교지수: [(KOSPI × 90%) + (CD금리 × 10%)]

### 3. 운용전문인력

구분	책임운용인력	부책임운용인력
성 명	김경윤	이동근
직 위	이사	선임운용역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11개	9개
다른 운용 자산규모(억)	581억	46억

주)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분부(공동운용)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과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자산의 규모와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실적 추이

-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7.06.04 ~ 18.06.03	16.06.04 ~ 17.06.03	15.06.04 ~ 16.06.03	14.06.04 ~ 15.06.03	13.06.04 ~ 14.06.03
종류A	-3.49	21.80	-10.19	-14.11	8.19
비교지수	2.76	17.56	-3.14	2.71	1.19

주1) 비교지수 : [(KOSPI × 90%) + (CD금리 × 10%)]

주2) 종류A(선후판매수수료부과, 기입제한없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특정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5.34%임을 감안하여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므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현대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3. 위험관리

- 필요시 주가지수선물 매도해지 또는 주식 투자비중 조절로 시장위험 관리
- 현대그룹플러스 관련주의 특성상 구조적 수요위축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산업의 비중 축소

III.

##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류C에 최초 가입한 후 1년 단위로 C2 → C3 → C4 → C5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yundai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yundaiam.com)